

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김연준*

요 약

냉전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선진 국가부터 허약한 국가까지 포괄안보를 구현하고 군사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규군(현역 군인)의 역량을 전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기능에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허약한 국가에서도 긴급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민간군사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700억 유로(약 100조원)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에서 예상되는 안보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안보 수준별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의 도발위협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 도입과 활용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MCs in Korea

Kim-Yeon Jun*

ABSTRACT

After the Cold War, obligations of nation are expanded to ‘Comprehensive Security’ that caring citizens’ safety and welfare in addition to national defense. Major nations are competing to revolutionize their army to be prepared for various threats. Major nations, including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tend to adopting and using PMCs eagerly. The size of PMC market estimated around 70 billion euro and growing rapidly. Korea has to adopt PMCs for building military force and operating efficiency while driving ‘Military Reform 2030’. Adopting PMCs in Korea can be considered as followings reflecting security situation. So, Korean army must consider implementing and adopting PMCs in order to building army force and attaining efficiency and preparing for the North Korean threat and various security risks.

Key words : Comprehensive Security, PMCs, Military Reform 2030

접수일(2014년 4월 20일), 수정일(1차: 2014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2014년 5월 24일)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본 논문은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게재 하였음.

1. 서론

1991년 舊소련의 해체로 야기된 탈냉전적 국제질서의 변화를 기점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정규군을 대신하여 정책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여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민간군사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700억 유로(약 100조원)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5]. 최근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안보 사영화’(security privatization) -공적(公的)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적(私的) 수단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군사기업 활용하는 방안-개념을 적극 도입하였다. 주요 선진 국가들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자국의 정규군이 보유한 자체의 역량으로 해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분야의 과학기술, 전문 인력 등 발전된 국가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군도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전투군무지원분야에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2]. 한국은 현재 선진국 수준의 민간군사기업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국력신장과 군사력 수준에 부합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군사기업 도입여부와 활용방향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민간군사기업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은 대략 2 분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민간군사기업 이해에 관한 연구로 ‘전쟁대행주식회사’(Singer, 2003; 유강은역, 2005), ‘민군 군사협력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한성욱, 2007), ‘전쟁을 삽니다’(이장욱, 2011)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국제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시사점’(김광우, 2005), ‘민간군사기업의 성장과 활용방안’(우재웅 등, 2007), ‘텔파이기법을 이용한 민간군사경비업의 도입과 발전과제’(김상진, 2008)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의의·유형, 민간군사기업의 역사와,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현황 등을 통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의 도입환경을 고찰하며, 제4장에서

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민간군사기업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 가능한 업무를 모색하고, 제5장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안보상황에 따라 민간군사기업의 도입 모델과 적용할 업무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용추세를 고려하여 한국군에 도입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정책적 관심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2. 민간군사기업 개념·유형, 활용 실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개념과 유형과 외국에서 활용 실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민간군사기업의 개념·유형

민간군사기업(PMC : Private Military Company)이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로 교전, 전략 입안, 첩보활동 등의 군사기술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법인체이며, 광범위한 군사분야나 안보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집단을 총칭한다[14]. 민간군사기업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다. 또한 교전, 첩보 활동, 전략 입안, 위협 분석·평가, 작전 지원, 전문 기술, 군사 훈련 등 제반 군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체이다[8]. 또한 민간군사기업은 합법적인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기관,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관련 서비스를 적시 적으로 제공한다. 민간군사기업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직원들에 대한 인적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군사공급기업(military provider firms), 군사자문기업(military consultant firms), 군사지원기업(military support firms)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9]. 첫 번째로 군사공급기업은 전장의 최전방지역에서 전투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군사자문기업은 전장에서 승리하기위한 전략, 작전, 전술적 조언과 훈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군사지원기업은 전장에서 지속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병참, 정

비, 의무 등 지원서비스를 담당한다.

군대업무를 대신 맡아 운영하는 민간군사기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3]. 첫 번째로 민간군사기업은 군사 분야에 대한 재화와 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단순한 군수지원에서부터 군사 교육·훈련제공, 전략·전술적 자문 및 지원, 요인경호, 시설경비, 지뢰제거, 비밀작전 그리고 전투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두 번째로 민간군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계층제와 분업이라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차원의 용병과 일시적 계약 행위자들과 구별된다. 세 번째로 민간군사기업으로서 복잡한 재무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법인으로서 입찰 참여 등 다양한 계약행위를 하며 대기업의 자회사로서 재정적 지원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군사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인 경우도 있으며 활동 무대는 국제적인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와 같이 민간군사기업은 전쟁과 관련한 업무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군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훈련, 군수지원 분야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2.2 외국의 민간군사기업 활용

민간군사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에는 정책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미국, 크로아티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2.2.1 ‘미국’의 경우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국제안보정세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대규모 안보위협은 감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함께 군사혁신의 일환으로 대규모 감군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이 추진한 군사혁신의 기본방향은 대병주의(大兵主義)에 입각하여 다수의 전투원을 유지하던 방식에서 군 병력을 과감히 줄이고 첨단장비로 대체하고자 하였다[10].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인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인종, 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비국가행위자와 테러집단 등에 의한 분쟁이 증가하였는바,

탈냉전시대 안보환경에서 분쟁의 증가와 분쟁의 성격 변화 등으로 인해 군 작전 소요는 더욱 증가되는 반면에 미군의 감군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정규군 부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증가되는 해외군사지원과 미군의 감군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여 미군의 임무를 분담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민간군사기업 도입 초기단계에는 대규모 병력을 감축하였고 군사적 부담이 적은 국내 병참지원 분야에서 활용을 하였다. 이러한 병참지원분야에서 민간군사기업 활용은 이후 다른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미군은 감군정책과 대외 군사원조임무가 증가로 인하여 군 전투병력 부족현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의 민간군사기업 활용은 국내에서 병참지원 분야에서 시작하여 군사훈련분야, 첨단무기 운영과 관리 분야에도 적용하였으며, 해외에서 작전 중인 미군에 대한 지원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자체 군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외 군사협력 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2.2 ‘크로아티아’의 경우

크로아티아는 자체 군사력은 주변 국가보다는 열세이지만 대외 군사협력을 통하여 군사력 열세를 보완하였다. 1991년 크로아티아는 구 유고연방으로 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과거 지배세력에서 소수세력으로 전락한 세르비아계 주민과 내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구 유고연방에서 분리 독립을 하면서 변변한 군대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내전은 주로 민병대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크로아티아 민병대는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없으며 보유한 장비도 적대세력인 세르비아측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비해서는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등 자체 군사력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UN은 크로아티아 내전사태 해결을 위해서 舊유고연방 지역 국가들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취하였으며 UN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내전사태 종식을 위해 노력하였다[13]. 크로아티아 정부는 내전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대세력인 세르비아계 주민의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고 군사력 증강

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8]. 이후 1994년 크로아티아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군사지원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미국계 민간군사기업인 MPRI를 지원받아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크로아티아는 MPRI와 '민주화 이행 프로그램'(DTAT, Democracy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게 되었다[6]. 민간군사기업인 MPRI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1년 후인 1995년 8월, 크로아티아군은 '폭풍 작전'(storm operation)을 통해 작전개시 일주일 만에 세르비아계의 점령지역 대부분을 장악하는 놀라운 변신을 하였다. 크로아티아는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 세르비아계와 휴전에 합의하였고, 마침내 1995년 11월 데이턴 평화협정(dayt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인접국가보다 자체 군사력이 약하지만 대외 군사협력의 대체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였다.

2.2.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냉전시대에 남아공은 자체 군사력 증강을 통해 역내에서 군사강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냉전종식 이후 남아공은 안보환경 변화와 '아파트헤이트'(apartheid) 정책-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하였던 백인우위의 인종차별 정책을 의미함-폐지를 주창하는 만델라 정권의 출범과 맞물려 감군(減軍)정책을 추진하였다. 남아공 정부의 대규모 감군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다수의 제대군인이 발생하여 이들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우려하였으나,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EO와 같은 민간군사기업들을 설립하여 활동하였다. 제대 군인을 주축으로 한 민간군사기업인 EO의 사업적인 성공은 남아공에서 이를 모방한 에리니즈(erinys), 트랜스 아프리카 로지스틱스(trans africa logistics) 등 유사한 민간군사기업의 창업을 유발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남아공은 아프리카지역에서 우수한 민간군사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고용된 직원의 수는 약 13만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7]. 냉전종식 이후 남아공에서는 대규모 감군정책에 따른 제대군인 급증으로 이들이 범죄조직과 연결될 경우 국내 치안불안이 우려되었으며 이에 대비하여 남아공내 민간인들은 새 정부의 치안조직만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민간군사기업에 자신의 보호를 의뢰하는 일이 급증하였다. 민간경비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남아공의 민간군사기업들은 민간분야에서 수요증가와 해외활동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남아공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12]. 그러나 자국의 민간군사기업이 해외영업활동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내전에 개입하게 되어 남아공 정부가 내전 당사국의 내전에 간섭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오해와 압력을 받는 등 대외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였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자국의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해외영업활동 규제를 골자로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남아공 민간군사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9].

이상과 같이 남아공에서는 대규모 감군계획에 따른 제대 군인 재취업과 국내치안 불안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설립하고 활용하였다.

2.2.4 '앙골라'의 경우

1975년 앙골라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내전상황에 처해있었다. 냉전기간에 앙골라 내전은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세력과 미국과 남아공의 지원을 받는 저항 세력 간에 대결을 지속하였다. 냉전종식과 함께 앙골라 내전은 국가외부의 군사지원이 중단되게 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쿠바군이 철수함에 따라 앙골라 정부군은 하루아침에 저항세력 6만 5천명보다 적은 규모에 처하게 되었다[6]. 1993년에 앙골라 저항세력은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토를 장악하였고 앙골라의 경제기반인 소요(soyo)지방의 석유생산지역을 장악하였고 내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앙골라 정부세력은 국가재정의 주 수입원인 소요지방의 석유지역 재탈환하기 위해서 자체 군사력도 부족하고 대외군사지원을 통한 내전문제 해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1993년 5월, 정부세력은 소요지방의 유전시설을 탈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남아공 출신 민간군사기업인 EO(Executive Outcomes)와 계약하였으며 EO는 소요지방의 유전지역을 탈환하였으며 이후에 앙골라를 떠나도록 계약을 하였다[3].

3. 한국의 민간군사기업 도입환경

냉전종식 이후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의 개념이 과거 냉전시대보다 더욱 확대되었고 위협의 주체가 보다 다양화 되고 있다.

3.1 안보 위협요인 변화와 정규군의 임무 과중

냉전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지구촌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규모의 감군(減軍)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전쟁의 위협은 감소한 반면에 무력분쟁의 증가, 무력분쟁 양상의 변화와 국가 간 군사협력관계 약화 등의 이유로 군대를 투입할 소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로 탈냉전시대 국제질서의 변화는 무력분쟁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소련은 국력의 약화로 인하여 대외문제에 개입할 여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제분쟁관리는 미국의 몫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에는 국가이익에 따라 국지분쟁에 선택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지구촌에는 분쟁을 관리할 중심국가가 없어진 이유로 국지적인 무력분쟁이 오히려 증가했다. 두 번째로 무력분쟁 양상의 변화는 군대의 개입을 확대하게 되었다. 탈냉전시대에는 국가 내에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들이 주도하여 테러조직, 범죄조직 등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국가행위자에 버금가는 위협양상을 표출하였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사태를 통해 알카에다(al-qaeda)같은 테러집단이 국가를 상대로 정규군 수준의 도발과 대량살상을 시도하였다. 냉전종식 이후 다발하고 있는 테러, 사이버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이 집중하고 있으며, 감축된 정규군만으로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에 봉착하였고, 이는 민간군사기업을 수요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 번째로 국가간의 군사협력의 약화로 인하여 민간군사기업을 활동할 여건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소련의 몰락은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의 와해를 초래하였으며,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에서도 냉전시대 수준의 군사협력력을 유지할 만한 동기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종식 이후 국가 간 군사협력 관계

가 약화됨에 따라 자국 안보를 강대국에 의존했던 약소국들은 자국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적 수단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국가 간 군사협력 관계의 변화로 인한 군사력의 공백을 민간군사기업이 대신하는 요인이 되었다[9].

또한 UN에서도 점증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에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9]. 평화유지활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역 파견에 따른 부대편성의 어려움, 부대 임무수행의 비효율성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계 민간군사기업인 MPRI와 계약하여 평화유지군을 훈련하고 배치하였다.

3.2 ‘국방개혁 2030’ 추진

한국군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년)’(이하 ‘국방개혁 2030’)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군은 ‘국방개혁 2030’을 통해 현존하는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에 따른 군사적 위협에 더하여 집중하고 있는 재해·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과 테러, 사이버 공격 대비 등 초국가적 위협 등에도 동시에 대비가 가능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첨단인 정보수단 보유, 신속한 지휘·통제수단 개발과 배치, 정밀타격수단의 전력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규모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2030’에서 우리군은 2012년 63만 6천여 명에서 2022년 52만 2천여 명으로 병력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병력감축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개혁 2030’에서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전투군무지원분야(시설물 유지·관리, 보급, 정비 등)에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방자원의 운용성과를 높여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2]. 따라서 우리는 ‘국방개혁 2030’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군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보 사영화’(security privatization) 추세와 군사력 건설·운영 간에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따라 한국의 안보상황에 부합되는 민간군사기업의 도입 수준과 범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4. 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여건 분석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정규군의 제한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고려하여 한국군에 민간군사기업의 도입 필요성 여부와 적용 가능한 업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1 도입 필요성의 탐색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대표사례 국가(미국, 크로아티아, 남아공, 앙골라)들은 자체 군사력 수준, 국가 간 군사협력 관계에 따라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체 군사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냉전이후 안보상황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대외 군사협력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 활용영역은 최초 국내의 병참지원분야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분야에서 활용하였고, 해외주둔 미군의 과중한 임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군사자문, 군사공급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자체 군사력은 약하나 대외 군사협력의 대체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지원받아 군사력 증강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다. 남아공의 경우는 자체 군사력은 충분하며 대외 군사협력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군사기업이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남아공 민간군사기업인 EOG가 국제분쟁-앙골라 내전(1993년), 시에라리온 내전(1995년) 등에 개입하여 국가적 비난에 봉착하게 되자, 남아공은 민간군사기업 해외영업을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아공 정부의 자국 민간군사기업 해외영업 불허 정책은 그들의 국내영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해외로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앙골라와 같은 허약한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도 미약하고 대외 군사협력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총체적인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을 임차하여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민간군사기업은 강대국 혹은 약소

국을 불문하고 자국의 안보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군사역량을 보완하는 효과적 대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국군은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면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방자원 운용의 최적화를 달성하려고 한다[2]. 현재 우리군은 민간군사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시설·환경관리, 정보기술, 수송, 정비, 기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군은 민간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단위부대단위로 민간 인력과 자원을 선발하거나 입찰하는 분권화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패키지단위로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 인력(제화)을 채용·관리하는 민간군사기업의 도입과 활용 대책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적용가능 업무의 모색

냉전이후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군사력 운용분야에서 '안보 사영화' 개념에 따라 민간군사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과 적시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군의 경우 '유사시 필수지원'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 선별적인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① 전투와 전투지원 분야, ② 군사정보 수집·처리 분야, ③ 군사자문과 훈련 분야, ④ 보안·범죄방지 분야, ⑤ 군수지원 분야, ⑥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투와 전투지원 분야는 전투참여, 교전행위와 작전지휘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분야는 국가 주권과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파병부대, 군 관련 학교·연구기관 등의 주둔지 경제업무는 필요한 경우 민간군사기업이 담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군사정보 수집과 처리 분야는 전산·정보체계와 분석·평가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보체계 개발과 운용업무는 현재 국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나 관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분석·평가 업무 역시 자료 수집체계와 의사결정 정보생산에 일부 기업이 참여중인 실정이다. 이에 군사정보 수집·처리 분야에 민간군사기업의 도입과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군사자문과 훈련 분야는 군사훈련, 교육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교

리와 군사교범 발간 등이 있는데 이 분야는 현재관련 기업이 없으며 향후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이다. 네 번째로 보안·범죄방지 분야를 들 수 있다. 전투 치안유지 문제나 대테러방지 그리고 인원·시설·정보 보안 업무들인데 관련 분야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이다. 다섯 번째로 군수지원 분야는 보급, 정비, 수송, 근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일부 분야는 아웃소싱과 함께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임무, 지뢰 제거, 교도소 관리, 대테러 지원(계획 수립, 협상 등), 어학자원 관리·활용 등이 있다. 현재 이러한 업무들을 현역 군인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역 군인은 군인사법에 의해서 계급별·연령별 정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계급으로 진급이 안되거나 계급별 정년이 도래하게 되면 재대 혹은 전역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현역 군인(정규군)의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군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는데 있어 위험수준과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과 한국군의 민간자원 활용수준을 고려하여 한국형 민간군사기업의 서비스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간군사기업은 국내에서 ① 군사정보 수집·처리 분야, ② 군사자문과 훈련 분야, ③ 보안·범죄방지 분야, ④ 군수지원 분야, ⑤ 기타 분야(재해·재난 임무, 지뢰 제거, 교도소 관리, 대테러 지원, 어학자원 관리·활용)에 도입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사업성과를 토대로 해외로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방안

한국군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① 현재의 ‘국방개혁 2030’ 추진과정, ② 한미동맹관계 조정과정과 ③ 통일한국 건설과정으로 구분하여 도입할 모델과 적용할 업무를 검토해보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1 ‘국방개혁 2030’ 추진단계에서 도입방안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고 미래의 안보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5.1.1 고려할 모델 : 미국

미국은 냉전종식이후 증가된 대외 군사협력을 보완할 목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였다. 동맹국가에 대한 지원과 ‘전쟁이외 군사작전’ 투입 등 대외 군사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감소된 정규군 규모에 비하여 증가된 임무는 미군의 임무부담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정규군의 추가 증원이나 동맹국가로부터 군사협력을 통한 임무부담 해소에 한계를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극복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이미 국방 분야에 민간자원의 활용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방개혁 2030’에 지원 임무에 대한 아웃소싱과 정규군의 감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2]. 한국군은 감축된 병력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면서 다양한 임무 수행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군은 평화유지활동으로 대표되는 해외파병 임무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한국군은 15개국 17개 지역에 1,440명의 국군장병이 대외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2].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도 참여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하면서 국제사회의 요청에 의한 평화유지활동, 재해·재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병력부족과 숙련도 미숙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군은 다양한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5.1.2 적용 가능한 업무

우리 군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적용 업무는 국가적인 위험부담과 법적논란이 적은 군사지원분야에서 군사공급분야로 단계별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로 군사지원분야중에서 ① 군수지원, ② 기타 분야를 담당할 경우 법적, 위험도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① 군수분야는 군부대의 보급·정비·수송, 부대 급식·세탁 및 평화유지군의 전투근무지원 소요 납품이 가능하다. ② 기타 분야는 재해·재난 임무, 교도소 관리, 제대군인 어학자원 관리·활용 업무를 통해 현역요원은 전투부대에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군사자문 분야로 업무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① 정책과제·교리 발전은 현역복무시에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대별·기능별 교범 작성, 해외군사자료 번역, 군사력 건설·운용 등 정책자료 발간 등이 가능하다. ② 교육훈련은 예비군(민방위 교육) 훈련통제·평가, 학교기관 교육(ROTC 등), 현역 훈련통제·평가 등 성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첨단장비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훈련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③ 보안·범죄예방은 민간분야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산보안, 비전투부대의 시설보안 업무도 적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군사공급업무는 기존의 민간군사기업 활용성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적용하되 평시에 군사정보 수집과 처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민간군사기업에서 현역 복무시 유경험자 명단을 DB화하여 관리한다면 군부대 필요에 따라 적시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국군은 현재 북한군에 비하여 병력규모면(2014년 정규군 기준 : 한국군 58만여 명, 북한군 119만여 명)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한 수준이다. 향후,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며, 북한군과의 병력규모면에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역 요원은 전투 분야에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군사지원분야, 군사자문 분야에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방개혁 2030’의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2 한미동맹관계 조정에 대비

우리는 지난 1970년대 미국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발언으로 국가적 혼란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미래의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5.2.1 고려할 모델 : 크로아티아

한국에서 대미(對美)관계가 소원해질 경우 한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 철수 혹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지원 철회가 발생하는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1991년 구 유고연방으로 독립하면서 미국과 (공식적 차원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크로아티아가 미국과 비공식적인 군사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군의 감군(減軍)정책 추진과 국제정세의 다변화로 인하여 내전상황에 처한 크로아티아에 미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정치·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크로아티아는 자체 군사력은 부족하지만 대외 군사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군사고문단을 대신하여 미국계 민간군사기업인 MPRI의 지도하에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였으며 군사적 성공을 달성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만의 경우도 미국과 군사협력관계의 갈등을 민간군사기업을 통해 군사력 공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9].

이상과 같이 한국 정부는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군사지원을 대신하여 민간군사기업의 자문을 받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며,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자문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가능한 민간군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5.2.2 적용 가능한 업무

한국도 기존의 군사협력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와 군사협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국가와의 공공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한미연합 작전과 정보처리·분석의 경험에 있는 우수한 전역 혹은 퇴역 간부를 활용하여 군사자문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의 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군사자문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여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주둔국의 군사자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5.3 통일한국 건설단계

통일 이후 남·북한 군사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대

규모의 감군(減軍)으로 인해 제대 군인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5.3.1 고려할 모델 :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재수준에서 남·북한의 정규군 병력을 합치면 약 180여만 명으로 세계 2위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며, 군비통합을 위해 감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제대·퇴역 군인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약 20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원의 처리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우수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통일 한국사회에서 적용에 실패하여 국제 테러조직, 범죄 집단 등에서 활동할 경우 국내·외적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병력 감축으로 야기된 다수의 예편 직업군인들을 민간군사기업에서 흡수하여 사회제반문제를 해결하였다. 한국의 경우 러시아의 사례를 토대로 민간군사기업 활용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인 알파(alpha)는 예편한 직업군인을 채용하여 체첸내전 당시 친 러시아 정권인 아흐메드 카디로브(akhmad kadyrov) 정권을 위해 병참 임무 및 특수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하였다[4].

한국은 통일된 이후에도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인 강대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게 되어 상당 수준의 정규군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 한국군과 북한군의 군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대·퇴역 군인의 재사회화, 도태되는 무기의 처리와 활용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군사력 운용의 융통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군사기업의 활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3.2 적용 가능한 업무

통일한국 건설단계에서 남·북한 군사통합으로 민간군사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풀이 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후 국경을 인접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비하여 제대한 북한 군인을 대항군으로 활용한 쌍방훈련,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작전에 대한 위게임 모델 독자개발과 용병술(전략, 작전술, 전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군사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간군사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남아공 정부가 민간군사기업에 활용에 대하여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자국의 민간군사기업 해외영업활동 과정에서 내전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아공 정부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군사기업 해외영업활동에 대한 정부방침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6. 결 론

한국도 ‘국방개혁 2030’을 추진과정에서 확고한 대북 억제전력 건설은 물론 세계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걸맞은 다양한 군사협력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의 운용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군사기업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의 안보상황을 ‘국방개혁 2030’ 추진 단계, 한미동맹 조정 대비와 통일한국 건설 단계로 구분하여 민간군사기업 도입 모델과 적용 업무를 아래와 같이 고려하였다[1].

첫 번째로 ‘국방개혁 2030’ 추진 단계에서는 군사지원분야에서 군사공급분야로 단계별로 민간군사기업을 확대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한미동맹 조정에 대비해서는 군사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제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군사지원을 대신하여 민간군사기업의 자문을 받는 경우와 우리가 협력국가에 군사자문을 해주어야 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사자문업무가 가능한 민간군사기업을 사전에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 건설단계에서는 남·북한 군사력 통합에 따른 제대·퇴역 군인의 재사회화, 도태 무기 처리와 함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제대한 북한 군인을 대항군으로 활용한 쌍방훈련,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작전에 대한 위게임 모델 독자개발과 용병술(전략, 작전술, 전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군사자문 등이 가능하다. 한편 민간군사기업이 해외영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방침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군에 민간군사기업 도입은 군사적인 불확실성 해소와 군사력 운용의 융통성 보장을 위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우리군(軍)은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부터 향후 통일단계까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민간군사기업 도입과 활용의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연준, “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2, pp. 134-135.
- [2] 국방부, ‘국방백서 2012’, 국방부, 2012, p.187-189, p.35, p.121, p.310.
- [3] 피터 싱어, 유강은 역, ‘전쟁대행주식회사’, 지식의 풍경, 2005, p.92, p.196.
- [4] 이장욱, ‘전쟁을 삼니다’,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p.311.
- [5] 르몽드지 한글판, 2010년 2월.
- [6] David Shearer, ‘Private Armies and Military Intervention’, Adelphi Paper No. 316, 1998, pp.58, pp.64.
- [7] Jenny Irish, ‘Policing For Profit’, ISSS Monograph Series. No. 39, 1999, pp.8.
- [8] Tim Spicer, ‘An Unorthodox Soldier: Peace and War and the Sandline Affair’, Edinburgh. Mainstream, 1995, p.15.
- [9] Peter, Singer. ‘Corporate Warriors: The Rise and Ramification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1, p.212, p.102-103, p.114-116, p.36-37.
- [10] Bart. Brasher, ‘Implosion: Downsizing the U. S. Military’, Westport: Greenwood Press, 2000. p.11.
- [11] Susan Woodward, ‘Balkan Tragedy: Chaos and Dissolution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1995. p.171.
- [12] Avant. Deborah, ‘The Market for force: The

- Consequences of privatization secur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161.
- [13] “The New York Times”, 1993-10-5.
- [14] 위키피디아 한글판: <http://ko.wikipedia.org>

[저자소개]



김 연 준 (Kim-Yeon Jun)

1983년 3월 문학사
1996년 11월 국방관리전공 석사
2012년 8월 경호학 박사
현재,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kyj23509@naver.com